

**자산보관 · 관리보고서**

이 보고서는 집합투자기구계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이 적정하게 운용되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한 내용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” 제 248 조제 1 항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.

신탁업자명 :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 
문의가능 전화번호 : 02-2004-8963/0991

**1. 집합투자기구의 개요**

- 가. 집합투자기구 명칭: 삼성 KODEX China H 증권 상장지수투자신탁 [주식]
- 나. 집합투자기구 분류: 증권 [주식형] 집합투자기구 다. 보관 · 관리기간: 2010. 10. 09 - 2011. 10. 08
- 라. 집합투자업자: 삼성자산운용(주)
- 마. 투자매매업자, 투자중개업자: 신한금융투자, 대우증권, 유진투자증권, SK증권, 삼성증권,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, 골드만삭스증권

**2. 집합투자계약의 주요 변경사항**

변경 일자	변경 사유	주요 변경내용	
		변경전	변경후
2011. 07. 01	제41조(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)의 지	①집합투자업자는 신탁자산의 과도한 금전보유 등의 사유로 인한 추후적외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기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증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.	①집합투자업자는 신탁자산의 과도한 금전보유 등의 사유로 인한 추후적외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기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증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.
	부칙	1. 지급기준일: 매월 마지막 영업일 및 회계기간 말일의 영업일 2. ~ 4. 생략 ② ~ ④ 생략	1. 지급기준일: 1월, 4월, 7월, 10월 마지막 영업일 및 회계기간 말일의 영업일 2. ~ 4. 생략 ② ~ ④ 생략
	신설		제1조(시행령)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법에 따라 정정신고서의 효력발생일에 시행된다. (이익분배 지급 시기 변경)

**3. 투자운용인력의 변경**

변경일자	변경사유	성명	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<sup>외</sup>	협회등록번호
2010. 03. 02	말소	사봉하	- 2001년 2월 Columbia Univ. 통계학 석사 - 2001년 2월 삼성생명 주식운용 - 2002년 4월 삼성자산운용 T주식1팀 운용역 - 2003년 1월 ~ 現	2109000726

			삼성자산운용 ETF 운용팀
2010. 03. 02	신규	김남의	- 2007년 2월 KAIST 산업공학 학사 - 2007년 8월 ~ 現 삼성자산운용 ETF 운용1팀

**4.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**

- 해당사항없음

**5.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경우의 그 내용**

- 해당사항없음

**6. 회계감사인의 선임 · 해임에 관한 사항**

변경전				변경일	변경후			
회계감사인명	계약기간	감사보수	계약방법		회계감사인명	계약기간	감사보수	계약방법
안진회계법인	1년	220만원	서면계약	-	-	-	-	-

\*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, 위에 명기된 회계감사인보수 금액은 모집합투자기구 및 자집합투자기구의 금액 모두를 포함하는 금액입니다.

**7. 법 제247조 제5항 각호의 사항 확인**

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계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
- 부합함

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
- 적정함

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
- 해당사항없음

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 
- 공정함

집합투자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  
- 적정함

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, 집합투자신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된 경우 신탁업자의 시정요구 및 이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 
- 해당사항없음

집합투자재산별로 미리 정해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매매결과를 공정하게 배분되었는지의 여부  
- 본 항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9조 제 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해당 신탁업자의 확인사항이 아님

**8. 그 밖에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**

-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예금과는 달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투자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.

- 이 투자신탁의 운용 및 투자 등에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